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CRC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430호

의 안 명 「공공부문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의 결 일 2021. 7. 5.

주 문

「공공부문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7월 5일

위원장 전현희

위원 안성욱

위원 이정희

위원 김기표

위원 김태응

위원 강재영

위원 박계옥

위원 오완호

위원 이근동

위원 박홍규

위원 임혜자

위원 임성문

위원 방이엽

위원 손난주

위원 강길연



[별지]

국민권익위원회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성범죄 · 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

2021. 7.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현 황	2
III. 문제점	6
1.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근로자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기준 미흡	6
2.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통보 불가로 징계회피 빈발	8
3. 수사기관 내부지침에 수사사실 통보 대상을 일부만 명시	11
4. 수사기관의 공공부문 종사자 자체 신분확인 불가	12
IV. 개선방안	13
1.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근로자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	13
2. 공공기관 종사자 성범죄, 음주운전 수사통보 체계 마련	14
3. 수사기관 내부지침에 수사사실 통보 근거 법률 명확화 ..	15
4. 수사기관의 공공부문 종사자 신분 확인 방안 마련	16
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7



I

추진배경

-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 국정과제 :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최근 성범죄, 음주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

- ※ '15년 인사혁신처는 3대(성, 금품, 음주운전) 비위행위에 대해 강화된 징계기준을 시행
- ※ '19.6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 ※ '20.12월 교육대, 사범대 학생 중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교사 임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 ※ '21.2월 인사혁신처는 동영상·사진 유포,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도 공무원 비위 유형에 추가하고 2차 가해에 대한 징계수위 마련 계획 발표

□ 공공부문 종사자는 공적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나, 일부 제도의 미흡으로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처리 불가

○ 공무직 근로자의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이 미비하여 해당 비위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 곤란

- ※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토록 '16.12월 제도개선 기 권고

○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자체 징계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수사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자진신고 또는 자체적발 없이는 징계처분 불가

-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관련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 통보 의무가 있어 성범죄, 음주운전은 통보대상에 미포함
- ※ 수사기관 내부지침에 수사사실 통보 의무가 규정된 법률 중 일부만 규정

○ 또한, 수사기관에서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해 자체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여 신분 은폐 시 수사 통보 제도 유명무실화 우려

□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및 공공부문 종사자 수사 통보 제도 보완을 통해 비위행위에 대한 적절한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부문 신뢰성 회복에 기여



II 현황

1. 공공부문 적용 법률 및 관리체계

< 행정 기관 >		< 공 직 유 관 단 체 >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지방출자 출연기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적용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총괄	총괄법률 없음 고용노동부 총괄	342개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기획재정부 총괄	152개 지방공기업법 적용 행정안전부 총괄	458개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행정안전부 총괄
기타 330개, 총괄법률 없음, 총괄기관 없음				

2. 공무직 근로자 관리 체계

□ 공무직 근로자

- (의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
 - ※ '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
- (업무) 기술지원, 환경관리, 사무지원 등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

< 공무직 현황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계
47,262	74,139	132,331	59,517	14,141	327,39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 실태조사(고용노동부, 2019.12.기준))

□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체계

- 고용노동부에서는 공무직 근로자의 체계적 인사관리를 위해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
 - 표준안에는 채용, 복무, 보수, 교육훈련 및 상벌 등에 관하여 규정
- (행정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는 표준안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표준안에 따라 공무원 근로자 채용, 보수 등에 대해 자체 규정을 제정하거나, 기존 정규직 인사 규정 등에 포함하여 관리
 - 다만, 표준안에서 공무원 근로자 상벌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포상 및 징계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3. 공공기관 관리 체계

□ 공공기관의 종류

- (공공기관) 정부의 투자·출자·재원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

<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의 종류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직원 정원 50인 이상 · 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1/2이상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 직원 정원 50인 이상 ·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 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의 종류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별도의 법인을 설립 하지 않고 자치단체 행정조직, 인력을 활용하여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소속직원은 공무원	· 민간 성격이 강한 사업을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지자체가 경영하는 일종의 독립된 법인 형태의 회사	· 지자체 고유 업무를 전문성, 기술성, 책임성을 확보 하면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

-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정·고시한 기관

□ 공공기관 관리·감독 규정 체계

-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주무부처의 지침에 맞춰 각 기관별 자체규정을 마련
- 다만, 지방직영기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소속 직원이 공무원이므로 지방공무원 관련 법규가 적용

구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법률	공공기관운영법(기재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행안부)		지방출자출연법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재부)			지방공무원관계 법규(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안부)
세부 기준	자체규정(각 기관)				자체규정 (각 기관)		자체규정(각 기관)

□ 공공기관 징계 관련 제한 규정 현황

- 조사·수사 중이거나, 징계 절차 진행중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의원면직, 승진·포상 등에서 제한을 받으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는 징계 감경이 불가

제한사항	요건	관련규정
의원면직	·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감사 관련 기관에서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인사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 임명권자는 임원 등이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수사 중인 때,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음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승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직원에 대해 일정기간 승진을 제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징계 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채용비위자에 대해 승진을 제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징계 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채용비위자에 대해 승진을 제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제한사항	요건	관련규정
포상·표창	·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사람, 징계절차 진행 중인 사람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등은 포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 지방공사·공단장의 장은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징계절차 진행중이거나 기타 공·사생활을 통한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징계감경	· 금품·향응수수, 성폭력범죄, 성매매, 음주운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감경 불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는 징계 감경 불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는 징계 감경 불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4. 수사기관 수사사실 통보 제도

- 공공부문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시작과 종료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 (규정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수사사실 통보 제도 규정 현황

대 상	통보대상비위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 사립학교 교원	모든 범죄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 지방공무원법 제73조 ·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 공공기관 임직원 · 지방공기업 임직원 ·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직무 관련 사건	·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2 ·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 지방출자출연법 제34조의2

Ⅲ 문제점

1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근로자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기준 미흡

- 공무원 근로자는 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므로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기관별로 자체 징계기준을 마련
 - 표준안에서는 각 기관별로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토록 하면서,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미규정

< 고용노동부, 행정기관용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

· 징계기준은 기관 특성(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비위 유형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부패행위 유형별 징계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참고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무원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 방안 권고('18.8월) : 공무원 근로자의 청렴의무 명확화, 부패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징계 기준 마련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근로자의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이 미비한 기관이 있어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 곤란
 - 46개 중앙부처 공무원 관리 규정 비교 결과 18개 기관은 성범죄에 대한 징계기준이 없으며, 17개 기관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미비
 -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해 각각 4개, 3개 기관은 징계사유로만 규정하고 세부 징계기준은 미규정

< 성범죄·음주운전 관련 징계규정 현황 >

구분	성범죄 징계기준	음주운전 징계기준
징계기준 있음	24개(52.2%)	26개(56.5%)
징계기준 없음	18개(39.1%)	17개(37.0%)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세부 징계기준은 없음	4개(8.7%)	3개(6.5%)
계	46개	46개

* '21.4월 법령정보센터 등록 공무원 관리규정 비교

< 참고 : 성범죄, 음주운전 관련 공공기관 징계기준 현황 >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주무부처의 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자체 징계기준을 마련
- 성범죄,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징계 감경이 불가하도록 하여 무관용 원칙을 확립

< 성범죄·음주운전 처리방침 >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공기업·준정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대한 징계처분을 두어야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비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직원을 기관장이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권한을 내부 규정에 둘 수 있음 • <u>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및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감경이 불가</u>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기재부)
지방공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함 • <u>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u>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행안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함 • <u>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u> 	지방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 (행안부)

- 고용노동부 「공무직 등 근로자 표준안」에서는 근로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포상 및 징계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공공기관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임직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이 적용

※ 근로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포상 및 징계규정」에 따름(고용노동부,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용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제26조)

- 각 법률에서는 조사·수사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적정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 종사자의 수사사실 통보 의무를 규정
- 그러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범죄, 음주운전 사건 발생 시 법적 근거 미비로 수사기관에서 소속기관에 통보 불가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에 대한 수사 통보대상을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하여, 성범죄, 음주운전은 통보대상에 미포함
 - 반면, 공무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

< 수사통보 제도 규정례 >

▲ 공공기관운영법 : 직무와 관련된 사건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 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 모든 사건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폭력사범 등 사건발생 시 조사단계에서부터 기관으로 통보되어 관리가 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일 경우 그 사건 자체를 기관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위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며 직장에서 승진이나 각종 혜택을 모두 받고 있으나, 기관마다 감사 기능에서 감사를 통해 찾아내기 어려운 현실로 개선이 필요함('20.10월)

○ 수사기관에서 수사사실이 통보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징계 회피 사례 반발

- 비위 적발시점에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 부당하게 승진하거나, 징계 시효 경과 및 당사자 퇴직 후 적발사실이 발견되어 징계 불가

< 관련 사례 >

- (징계회피 후 승진) A는 2018년 음주운전을 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승진임용이 될 수 없었는데도 음주운전 6개월 후인 다음해 2019년 3급에서 2급으로 승진임용 ('20.10월 감사원 감사결과)
- (징계회피 후 승진) 연구기술직 A는 2016년 음주운전을 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12개월 또는 18개월 동안 승진임용이 될 수 없었는데도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 음주운전 비위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음주운전 4개월 후에 A를 연구기술직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임용('19.10월 감사원 감사결과)
- (징계시효 경과·퇴직)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24명은 음주운전사건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2019년 11월까지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지 않아 징계처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중 5명은 2019년 11월 현재 징계시효 경과 또는 퇴소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게 됨('20.6월 감사원 감사결과)
- (징계시효 경과·퇴직)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직원 15명이 음주운전사건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2017년 4월까지 그 사실을 공사에 보고하지 않아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이 중 8명은 징계시효가 경과하거나 퇴사하여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없게 됨('17.10월 감사원 감사결과)

○ 기관 내부 징계기준이 있더라도 비위행위를 숨길 경우 현행 법령상 한계로 기관 자체적 비위사실 확인에 어려움 존재

- 성범죄는 범죄경력회보서로 확인할 수 있으나, 범죄경력회보서는 「형실효법」 제6조에 규정된 요건에 한해 필요 최소의 범위에서 조회 가능하여 수사기관 통보 없이 자체 감사로는 파악 불가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 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 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사실 파악을 위해 각 기관에서는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

<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징계규정을 운영중이나 공무원과 달리 공직 유관단체 직원은 음주운전 적발사실이 별도로 통지되지 않고 있음. 경찰서에 질의하니 **음주운전 처벌사실은 개인정보라 직원 각 개인에게 위임장을 수령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여야 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여부가 조회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또 다른 방법으로 개개인이 운전경력증명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받았으나 이 또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개인이 양심적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하거나 구속되어 결근을 하지 않는다면 직장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직장 차원에서 직원의 음주운전 적발여부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하다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른 음주운전 징계규정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임**(19.6월 국민신문고)
- 우리 기관은 종합감사 수감 결과 임직원의 음주운전 위반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처분요구 받았으나 직원들에게 운전경력증명서의 자발적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도 제출하지 않아 '직원 음주운전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청에서 보유중인 개인정보(조회 요청 대상자 중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자 명단, 혈중알콜농도, 음주사고여부)를 요청하였으나 법적근거 미비를 사유로 해당 자료를 수령하지 못함.** 최근 음주운전을 금기시하고 공직자에 대한 고도의 모범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각 공공기관들이 솔선하여 음주운전 퇴치를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19.3월 국민신문고)

3

수사기관 내부지침에 수사사실 통보 대상을 일부만 명시

○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내부지침*에 따라 수사 업무를 처리

* 검찰(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범죄수사규칙)

○ 수사기관 내부지침에 수사사실 통보 의무가 규정된 법률 중 일부만 명시 되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되어야 할 비위행위자를 통보하지 않고 사건처리

- 「검찰사건사무규칙」과 「범죄수사규칙」에 수사사실 통보 근거 법률로 「국가·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공기관운영법」만 명시

- 수사사실 통보 의무가 있음에도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은 미규정

< 수사통보 관련 법률 규정 현황 >

구분	국가 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공기관 운영법	지방 공기업법	지방 출자출연법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	○	○	○	○	×	×
범죄수사규칙 (경찰청)	○	○	○	○	×	×

▲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⑤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 범죄수사규칙(경찰청)

제46조(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보) 경찰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무원 등의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비위행위자가 본인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자 신분을 속일 경우 수사기관에서 확인 불가

- 현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하며, 군인도 시스템 연계를 추진중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신분 확인이 불가능

< 수사기관 신분 확인 시스템 구축 현황 >

- 공무원의 경우 '15년 공무원연금공단과 형사사법포털(KICS)를 연계하여 공무원 여부와 소속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시스템 구축 전에는 무직, 자영업자 등으로 신분을 속이는 사례가 있었으나, 시스템 연계 후에는 신분을 속이더라도 자체 검증이 가능
 - ※ (시스템 구축 전 신분 은폐 사례) 감사원 감사결과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 경찰청 음주단속에 적발된 국세청 직원 244명 중 107명이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숨긴 것으로 밝혀짐('15.9월 언론보도)
- 최근에는 사학연금공단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립학교 교원 신분이 가능해졌으며, 군인의 경우에도 신분확인을 위한 시스템 연계를 추진중

- 비위행위자가 신분 은폐 시 수사통보 대상 비위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수사사실 통보가 누락되어 적절한 징계처분 불가

< 유사 지적 사례 >

- 음주운전 사실이 경찰로부터 이첩될 경우 관련자는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게 되고 이 경우 진급이나 명예전역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적발된 군인 등은 경찰에서 진술할 때 신분을 숨길 가능성이 있음.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공무원연금공단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어 공무원이 신분을 숨겨 징계처분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과 같이 군인 등도 경찰이 음주운전을 적발하면 군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19. 9월 감사원 감사결과)

IV 개선방안

1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근로자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근로자의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마련

- (고용노동부) 표준안에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기관별 세부 징계 기준을 마련할 것을 명시

⇒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개정(고용노동부)

- (각 기관) 기관 내부 규정에 성범죄, 음주운전 종류에 따른 자체 징계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각 기관 공무원 관련 규정 개정(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 참고 :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규정한 사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한정한다)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가목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별표 1의4]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강등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파면 - 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② 공공기관 종사자 성범죄, 음주운전 수사통보 체계 마련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수사통보 대상 비위에 성범죄, 음주운전 사건 포함

⇒ 「공공기관운영법」(기획재정부),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행정안전부) 개정

[개정안(예시)]

현 행	개 정 (안)
<p><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u>직무와 관련된 사건</u>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u>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건</u>을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수사기관 내부지침에 수사사실 통보 근거 법률 명확화

-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등 수사사실 통보 의무가 규정된 법률을 수사기관 내부지침의 수사사실 통보 규정에 포함

⇒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 「범죄수사규칙」(경찰청) 개정

[개정안(예시)]

현 행	개 정 (안)
<p>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⑤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수사의</p>	<p>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⑤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지방공기업법」</p>

<p>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 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 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 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보서에 따른다.</p>	<p>제80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의2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고발사건 수사개시 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고발 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p>
--	---

4] 수사기관의 공공부문 종사자 신분 확인 방안 마련(정책제안, 중장기검토)

- 수사기관에서 공공부문 종사자 신분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종사자 확인 정보 제공 방안 강구
-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기관(기획재정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법」 적용 기관(행정안전부)

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근로자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근로자의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마련 - 표준안에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기관별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할 것을 명시 ※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개정 - 기관 내부 규정에 성범죄, 음주운전 종류에 따른 자체 징계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각 기관 공무원 관련 규정 개정 ※ 「근로기준법」 제9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각 기관의 취업규칙 개정 시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조회 및 동의 등 변경절차 준수 	<p>고용노동부</p> <p>'22. 7월</p> <p>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p> <p>'22. 7월</p>	
② 공공기관 종사자 성범죄, 음주운전 수사통보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수사통보 대상 비위에 성비위, 음주운전 사건 포함 ※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p>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p> <p>'22. 7월</p>	
③ 수사기관 내부지침에 수사사실 통보 근거 법률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등 수사사실 통보 의무가 규정된 법률을 수사기관 내부지침의 수사사실 통보 규정에 포함 ※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 「범죄수사규칙」(경찰청) 개정 	<p>법무부 경찰청</p> <p>'22. 7월</p>	
④ 수사기관의 공공부문 종사자 신분 확인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기관에서 공공부문 종사자 신분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종사자 확인 정보 제공 방안 강구 	<p>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경찰청</p>	<p>중장기검토 (정책제안)</p>

정 본 입 니 다 .

2021. 7. 6.

국 민 권 의 위 원

